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에따른의견요구의건에대한의견서

산업건설위원회

1996. 7. 15

□ 신청현황

- 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(특정폐기물)
- 위치 : 대산읍 대죽리 753번지
- 면적 : 2,900㎡
- 시설용량 : 450Kg/hr

□ 위원회 의견

동건은 기존공장내에 설치하여야 공장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시설의 관련법규 준수 설치와 민원 발생이 없는 완벽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요망함

제안번호	제 77 호
의결년월일	1996. . . (제 회)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에 따른 의견요구의견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6. 5. 6.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 처리시설) 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의견

의 안 번 호	77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6. 5. 6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▣ 제안 이유

대산읍 대죽리 753 번지 서광 하이테크(주) 대표이사 황 경 식으로부터 기존의 재합용 공장내에 폐기물 처리시설(소각로)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신청이 있어, 도시계획법 제 12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▣ 주요 골자

- 위 치 :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53 번지
- 시 설 명 : 폐기물 처리시설(특정폐기물 처리시설 : 소각로)
- 면 적 : 2,900 m²
- 시설규모 : 450kg/hr

▣ 근 거

도시계획법 제12조 제1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

位置圖

축척 1 : 25,000

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(안)요지

▣ 신청현황

- 신청인 :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53 서광하이테크(주) 대표이사 함 경 식
- 시설명 : 폐기물 처리시설(특정폐기물 처리시설)
- 위치 :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53 번지
- 면적 : 2,900 m²
- 시설용량 : 450 kg/hr
- 목적 : 폐합성 수지류, 유기용제류 이용 화학적 증류 합성에 의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공장으로서 재활용 제품 생산후 남는 폐기물을 처리코저 소각로(폐기물 처리시설)를 설치코저함

▣ 공장 현황

- 면적 : 3,530 m²
- 건물평 : 608 m²
- 생산제품 : 폴리에스텔 수지제품, 유기용제류
- 연간매출액 : 29 억
- 종업원수 : 28 명

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(안)에 대한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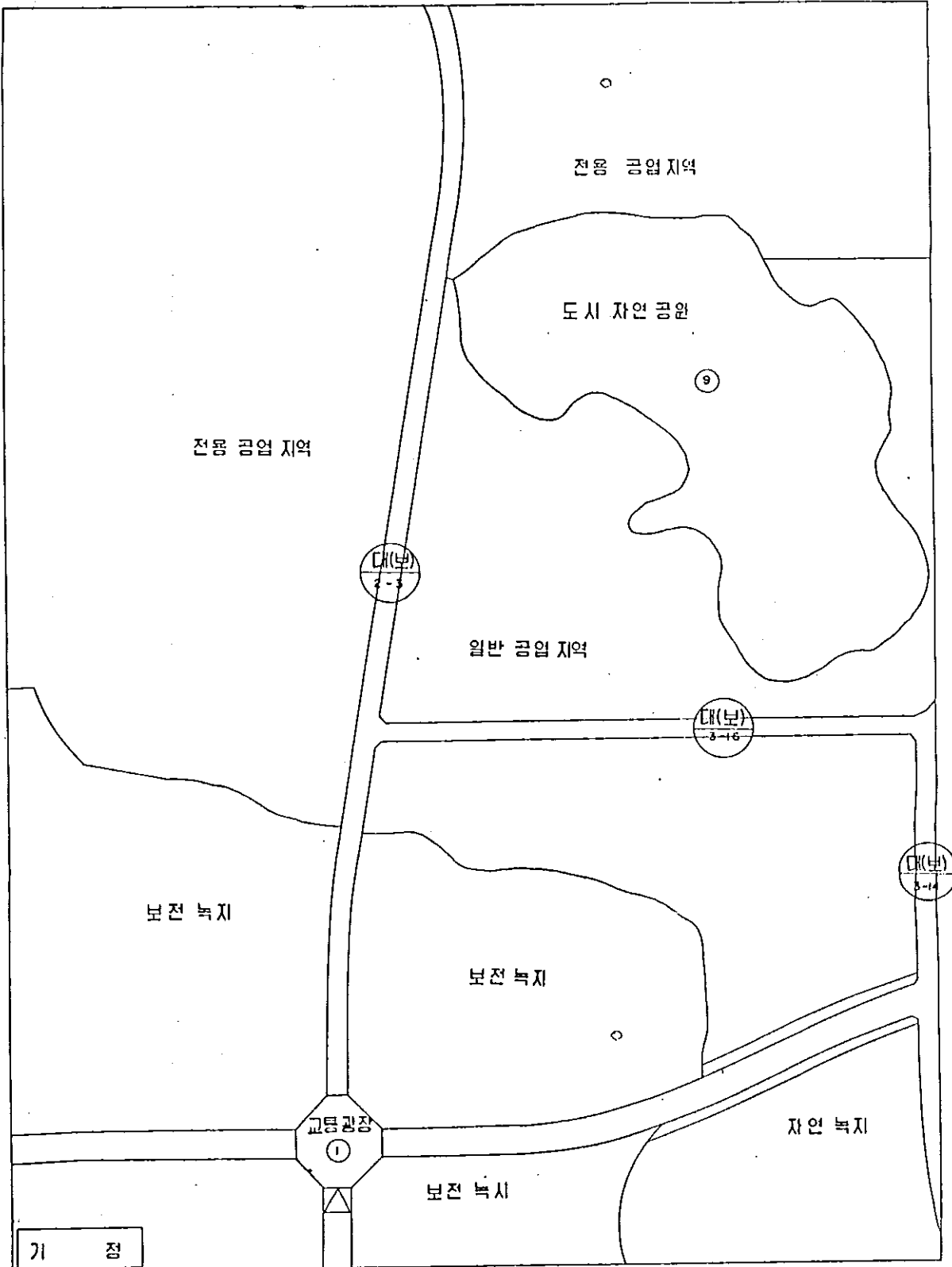
■ 주민 의견 (공람 결과)

- 공람기간 : '96. 1.31 - '96. 2.15 (14일간)
- 공람장소 : 도시과 및 대산읍사무 사무실
- 의 견 : 없음

■ 관련기관 및 부서의견

관 련 기 관 및 부 서	의 견 요 지	저 족 유 무
금 강 환 경 관 리 청	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된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받아 적정하여야 하며, 특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개별법에 의한 각종 행위 허가 받아 가능	소각로 설치시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저촉없음
환 경 보 호 과	폐기물 처리시설은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이며,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	"
청 소 과	폐기물 관리법의 제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하여야 함	"
지 역 경 제 과	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등록된 업체로서 면적의 변경이나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	"
수 산 과	오염원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	"
대 산 출 장 소	환경 관계법 및 폐기물 관리법의 제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함	"
문 화 공 보 담 당 관 실	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나, 매장 문화재 발견시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	"

도시 계획도



도시 계획도

